

뚝딱사회보험법

제2판 1쇄 정오표 및 추록

(2026년 03월 25일 기준)

※ 본 정오표 및 추록은 2025년 10월 14일 발행된 “뚝딱사회보험법(제2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막사회보험법(제2판) 제2판(2025년) 1쇄 - 정오표 및 추록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6년 03월 25일 기준)

2025년 10월 14일 발행된 **독막사회보험법(제2판)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 및 추록을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위치]	수정사항													
<p>p. 11 6. 위원회의 구성</p>	<p>[법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4 707 1202 942"> <tr> <td data-bbox="314 707 409 942">구 성</td> <td colspan="3" data-bbox="409 707 1202 784">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td> </tr> <tr> <td data-bbox="314 784 409 840">위원장</td> <td data-bbox="409 784 538 840">국무총리</td> <td data-bbox="538 784 787 840">부위원장</td> <td data-bbox="787 784 1202 840">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td> </tr> <tr> <td data-bbox="314 840 409 942">위 원</td> <td data-bbox="409 840 538 942">대통령령</td> <td colspan="2" data-bbox="538 840 1202 942">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td> </tr> </table>		구 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위 원	대통령령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구 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위 원	대통령령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p>p. 12 6-3.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p>	<p>실무위원회</p>	<p>[법 개정]</p> <p>위원의 구성</p> <p>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①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p> <p>②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p>												
<p>p. 13 6-4. 전문위원회 설치</p>	<p>전문위원회</p>	<p>[법 개정]</p> <p>위원의 구성</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p> <p>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p>												

<p>p. 17 2-2.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p>	<p>[내용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그 외</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해진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이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td> </tr> </table>	그 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해진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이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해진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이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p>p. 34 5-2. 위원회의 구성</p>	<p>[법 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위원장</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td> </tr>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위 원</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④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td> </tr> </table>	위원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④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위원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④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4 **독막사회보험법**

<p>p. 40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p>	<p>[내용 추가]</p>		
	<p>보험급여의 종류</p>	<p>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p>	<p>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p> <p>① 진폐 보험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② 건강손상자녀 보험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p>
<p>p. 44 4. 출퇴근 중 사고</p>	<p>[내용 수정]</p>		
	<p>출퇴근 재해</p>	<p>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2.-③-①)로 본다.</p> <p>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p>	
<p>p. 47 6-4.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p>	<p>[법 개정]</p>		
	<p>판정위원회 심의 제외</p>	<p>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그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p>	
<p>p. 49 8-2. 간병의 범위</p>	<p>[법 개정]</p>		
	<p>간 병</p>	<p>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p>	<p>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p> <p>☆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p. 128</p> <p>4. 고용 조정의 지원 요건 등</p>	<p>[법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4 329 1202 860"> <tr> <td data-bbox="314 329 427 860">고용유지 지원금</td> <td data-bbox="427 329 560 860">우선지원 사업주</td> <td data-bbox="560 329 1202 860"> <p>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p>☆시행령 제18조</p> <p>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u>2분의 1 이상</u>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td> </tr> </table>	고용유지 지원금	우선지원 사업주	<p>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p>☆시행령 제18조</p> <p>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u>2분의 1 이상</u>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 지원금	우선지원 사업주	<p>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p>☆시행령 제18조</p> <p>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u>2분의 1 이상</u>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p>p. 135</p> <p>6-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p>	<p>[법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4 942 1202 1177"> <tr> <td data-bbox="314 942 450 1177">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td> <td data-bbox="450 942 583 1177">요건별 지원 금액</td> <td data-bbox="583 942 1202 1177"> <p>요건 ②에 따른 지원 금액</p> <p>②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p> </td> </tr> </table>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요건별 지원 금액	<p>요건 ②에 따른 지원 금액</p> <p>②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p>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요건별 지원 금액	<p>요건 ②에 따른 지원 금액</p> <p>②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p>		
<p>p. 135</p> <p>6-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p>	<p>[법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4 1248 1202 1541"> <tr> <td data-bbox="314 1248 450 1541">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td> <td data-bbox="450 1248 583 1541">요건별 지급 방식</td> <td data-bbox="583 1248 1202 1541"> <p>요건 ②에 따른 지급 방식</p> <p>요건 ②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아래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3.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td> </tr> </table>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요건별 지급 방식	<p>요건 ②에 따른 지급 방식</p> <p>요건 ②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아래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3.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요건별 지급 방식	<p>요건 ②에 따른 지급 방식</p> <p>요건 ②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아래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3.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6 **독막사회보험법**

<p>p. 148 7-4.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p>	<p>[내용 추가]</p> <p>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u>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div> <p>② 수급자격자는 위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p> <p>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p. 148 8.기초일액의 산정 등</p>	<p>[법 개정]</p> <p>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기초일액으로 한다.</p>				
<p>p. 173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p>	<p>[법 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times \frac{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p> </td> </tr>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td> </tr> </table> </div>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times \frac{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p>	<p>(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times \frac{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p>				
<p>(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p. 179</p> <p>2.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p>	<p>[법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4 329 1200 410"> <tr> <td data-bbox="314 329 435 410">예술인 구직급여</td> <td data-bbox="435 329 556 410">구직급여 일액</td> <td data-bbox="556 329 1200 410">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u>100분의 60</u>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한액 : 6만 8100원).</td> </tr> </table>	예술인 구직급여	구직급여 일액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u>100분의 60</u>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한액 : 6만 8100원).
예술인 구직급여	구직급여 일액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u>100분의 60</u>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한액 : 6만 8100원).		
<p>p. 271</p> <p>3. 임원 등</p>	<p>[법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4 498 1200 793"> <tr> <td data-bbox="314 498 414 793">임원</td> <td data-bbox="414 498 511 793">임명</td> <td data-bbox="511 498 1200 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아래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td> </tr> </table>	임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아래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아래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p>p. 277</p> <p>3. 선별급여</p>	<p>[법 개정]</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②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회적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hr/>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주기는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 급여의 내용·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p. 294</p> <p>3. 임원</p>	<p>[법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4 1357 1200 1438"> <tr> <td data-bbox="314 1357 414 1438">임원</td> <td data-bbox="414 1357 511 1438">감사</td> <td data-bbox="511 1357 1200 1438">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td> </tr> </table>	임원	감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	감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p>p. 300</p> <p>5. 보험료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 : 1만분의 719).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①에서 정한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 : 1만분의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p>p. 340. 11-4.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p>	<p>[법 개정]</p> <p>☆자녀 수의 인정방법</p> <p>①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아래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p>p. 347. 3. 임원</p>	<p>[법 개정]</p> <p>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p>p. 354 8. 급여의 환수</p>	<p>[법 개정]</p> <p>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환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의무자(제121조)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급여 제한 사유(p.367-1-③)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② 공단은 ①의 1. 2. 4.의 사유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p>
<p>p. 357 4.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p>	<p>[법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1천분의 250

<p>p. 367</p> <p>1. 급여의 제한</p>	<p>[법 개정]</p> <p>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p>p. 378</p> <p>9. 연금 보험료의 추납납부</p>	<p>[법 개정]</p> <p>③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p. 384</p> <p>2. 기금의 관리 및 운용</p>	<p>[법 개정]</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p>
<p>p. 385</p> <p>3.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p>	<p>[법 개정]</p> <p>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p. 386</p> <p>5. 기금 운용 계획</p>	<p>[법 개정]</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내용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